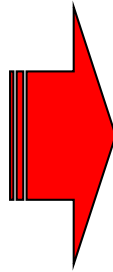


2016풍수해보험제도 담당공무원 교육



풍수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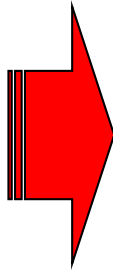


- 풍수해보험법2조: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 2호에 따른
태풍,호우,홍수,해일,강풍,풍랑,대설,지
진을 풍수해로 규정

풍수해보험 이란?

- ✓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로 인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의 **피해**를 **보상**하는 **선진국형 제도**
[해외사례] 미국 - 홍수보험, 일본 - 지진보험, 프랑스 - 자연재난보험
- ✓ **정부**(국가/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5%~86%** 을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55~62%, 차상위 76%, 기초수급자 86%
2016년부터 지자체별 추가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감소(지자체별 사정)
- ✓ **민영보험사**(삼성/현대/동부/KB손보/농협손보)에 **가입**하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민영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

풍수해보험 도입배경



-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3월 폭설 대형피해 발생, 당시 재난지원금 100% 보상(매미: 2조 580억, 폭설: 7500억)이
로 인해 막대한 국가재정피해 및 도덕
적 해이 문제 발생(사유재산피해지원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형평성, 주민
불만가중-자율방재책임의식 결여)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선 사유
시설에 대한 직접지원제도 無
⇒ 정책보험 실시
- [해외사례] 미국 - 홍수보험, 일본 -
지진보험, 프랑스 - 자연재난보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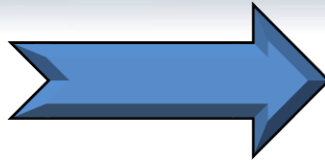
풍수해보험 도입취지

- ✓ **법적 근거: 풍수해보험법 1조 풍수해로 인한 피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 국민생활안정기여
- ✓ **재난지원금제도한계** (현행 지원기준은 복구비용대비 30~35%에 불과)
현행 5000만원한도 반파이상 지원(소파사고불지급)
풍수해보험대비 10/1수준, 주민불만가중
- ✓ **화재보험 풍수재특약이 있으나 가입률 저조** (보험료고액, 설해, 지진은 면책)
자연재해관련 유일한 독립상품

보험가입 가능 목적물



주택, 온실



단계적으로 보험목적물
확대예정

구 분		세 부 내 용
주 택	정 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축물 (합법주택)(단 재산세과세대상가능) ※ 별장및 펜션(민박형펜션) 가입가능
	제외물건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 제외) 주1) · 부속건물 : 주 건물이 아닌 창고, 외양간 등 ·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을 말함)
온 실	정 의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 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 의 온실(2017년부터 내재해형규격만 가입가능)
	제외물건	· 100㎡ 미만의 자동화비닐하우스·철재파이프하우스·목재하우스·죽재하우스·1-A2형(표고, 양묘) ·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 것) ·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 농·임업용 목적이 아닌 온실

보상하는 손해 및 재난기준

구 분		기 준
태 풍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 때
호 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12시간이 110mm 이상 될 때
홍 수		주의보 수위를 초과할 경우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될 때
풍 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때
해 일	폭풍	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다만, 발효기준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 지정된 값에 의함.
	지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하여, 국내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할 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될 때
지 진		국내내륙에서 규모 3.5 이상 또는 국내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상하는 손해의 전제조건

전제조건	보험의 목적이 위치한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기상특보는 없었으나, 특보발령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5동 이상 또는 광역시/특별시/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상품	목적물	동산보장	가입방식	보상방법	비고
풍수해 I	단독·공동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가능 (온실제외)	개별	정액보상	
풍수해 II	단독·공동주택	가능 (세입자동산포함)	지자체단체	정액보상	풍수해 I 대비(자부담) 약10%저렴
풍수해 III	공동주택	불가능	공동주택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풍수해보험 상품 I, II

주택 -기본담보및 보상금액(주계약)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기준보험가입금액 70%형	기준보험가입금액 80%형	기준보험가입금액 90%형
전파	50m ² 이하	3,500만원(3,150만원)*	4,000만원(3,600만원)*	4,500만원(4,050만원)*
	50m ² 초과	주택면적 (m ²)×70%×100만원 (90만원)*	주택면적 (m ²)×80%×100만원 (90만원)*	주택면적 (m ²)×90%×100만원 (90만원)*
반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침수	50m ² 이하	140만원	150만원	160만원
	50m ² 초과	80만원 + {1만2천원 × 주택면적(m ²)}	75만원 + {1만5천원 × 주택면적(m ²)}	70만원 + {1만8천원 × 주택면적(m ²)}

풍수해보험 상품 I, II

주택 -선택담보및 보상내용(특약)

구분	보상내용
동산담보 특약	주택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피해(전파,반파,소파)에 대해 해당주택보험금10%지급,침수의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 -침수높이 30cm이하:90만원 + (0.6만원 × 주택면적*) -침수높이 30cm초과100cm이하:동산담보특약 반파보험금 -침수높이 100cm초과:동산담보특약 전파보험금
주택소파 손해不보 장특약	기본담보의 소파손해를 보상받지않는 조건으로 보험료할인 (11.24%)
주택침수 손해不보 장특약	주택침수피해를 보상하지않는조건으로 선택가입(풍수해 I 만 가입 가능)

◆풍수해보험상품 I 과II 의 차이는 지자체를 통한 단체계약의 차이,온실대상유무
세입자동산은 II만 가입가능

풍수해보험 상품 I, II

-침수보험금확장특약(주택소유자만 해당)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기준보험가입금액70%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80%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90%보상형
침수	50m ² 이하	140만원	150만원	160만원
	50m ² 초과	80만원 + {1만2천원 × 주택면적(m ²)}	75만원 + {1만5천원 × 주택면적(m ²)}	70만원 + {1만8천원 × 주택면적(m ²)}

-세입자동산(II)

구분	보험가입금액		
	기준보험가입금액70%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80%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90%보상형
세입자동산	주택보험가입금액의 10%한해 가입.해당주택보험가입금의 10%지급.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 -침수높이 30cm 이하:90만원 + (0.6만원 × 주택면적*) -침수높이 30cm 초과~100cm 이하:세입자동산의 반파보험금 -침수높이 100cm 초과:세입자동산의 전파보험금		

●세입자는 중복보상가능-재난지원금, 침수보험금(소유자미가입, 세입자 가입시)
 소유자가입시 세입자 미가입의 경우 재난지원금대상에서 빠지니 필히 가입할것!

풍수해보험 상품 I

온실-기본담보및 보상금액(주계약)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기준보험가입금액 70%형	기준보험가입금액 80%형	기준보험가입금액 90%형
전 파	기준단가×70%×총피해면 적	기준단가×80%×총피해면 적	기준단가×90%×총피해면 적
반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 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온실의 잔존물 제 거비용	풍수해로 파손된 온실잔존물의 해체,청소,상차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은 제외)보험금의 10%한도		

온실-선택담보및 보상내용(특약)

구분	보상내용
단순비닐파 손담보특약	온실의 단순피복재파손으로 동별로 전부교체가 필요할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한도보상
하천고수부 지내 온실의 강풍,대설만 의담보특약	하천고수부지내 온실은 강풍,대설재해만 보상,보상내용은 온실과 동일(보험기간은 1년중 동 절기(11월~3월)중 선택

손해유형

▶주택

피해유형	세 부 사 항
전 파	1.기둥,벽체,지붕등이 완전 파손,재건축외엔 사용이 불가능한경우 2.수리비가 재축비용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3.전파는 이축또는 재축을 전제로 하지않는다.
반 파	1.기둥,벽체,지붕등이 일부 파손되어 재시설없이 파손된부분만 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내력벽30제곱미터,기둥,보,지붕틀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변경하는것) 2.수리가 보험가입금액의 35%를 초과하는경우
소 파	기둥,벽체,지붕등이 일부 파손되어 재시설없이 파손된부분만 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벽5㎡,기둥,보,지붕틀1개,지붕재5㎡ 이상을 수선또는 보강하는경우)
침 수	주거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아니하고는 사용할수없는 경우(단,동산은 침수높이에 따라 보험금상이)

※ 유실로 형체가 없는 경우는 전파와 동일

주택피해는 주거용면적 피해를 말하며, 부속물,부착물(간판등),담벼락, 대문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동일주택에 대해 전파,반소파,침수동시발생시는 높은 등급적용

손해유형

▶ 온실

피해유형	세 부 사 항
전 파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70%이상 재구입하여 보수하지않고는 사용할수없는 경우
반 파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35%이상 70%미만재구입하여 보수하지않고는 사용할수없는 경우
소 파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20%이상 35%미만재구입하여 보수하지않고는 사용할수없는 경우
피해산정	피해를 입은 시설물범위에서 수직으로 내린 바닥 면적을 기준(피해면적=피해부분 가로길이*세로길이)

※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의 기둥,벽,보,지붕틀 등의 골조(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서까래)가 구부러지거나 꺾인 경우 주저앉거나 유실된 경우에만 보상(온실의 골조피해만 보상하는것으로 내부의 농작물이나 부대시설은 보상대상이 아님.

단순히 비닐등 덮개만 파손된경우는 단순비닐파손담보특약가입시만 보상가능

풍수해보험 Ⅲ

- 주택중 공동주택(아파트,빌라,연립주택등)에 한해 실손비례형으로 가입,자기부담금특약이 있음(0~50만원)
- 아파트의 경우 특수물건(16층이상)의 경우 보험료지원無-특수물건은 보통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에 의무가입
- 실제 아파트물건의 경우 일부보험가입가능성이 높음(보험료고액)비례보상주의

공통사항

- 대상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우박,벼락추위,서리,얼음등은제외)
- 보험기간은 1년원칙(해마다 갱신)갱신시 5%할인적용(소멸성보험)
- 단 하천고수부지 온실 동절기 가입예외(단기)
- 지진재해부보장특약,보험료분할납입특약(자부담30만원이상계약한해분납가능)보험료자동납입특약,손해방지비용지원(20만원한도)계속계약할인(5%),장기계약할인(3년까지)등

보상하지않는 손해

- ▶ 고의,중과실
- ▶ 도난,분실
- ▶ 노후및 하자(자연소모)
- ▶ 추위,서리,얼음,우박으로 인한 손해
- ▶ 풍수해로 생긴 화재,폭발(단순폭발)풍수해로 인한 손해시엔 풍수해피해는 보상
- ▶ 축대,제방등의 붕괴(풍수해로 인한 직접피해는보상)
- ▶ 침식,지하수활동에 의한 손해
- ▶ 기 진행중인 풍수해피해
- ▶ 온실 시설의 단순피복재(비닐등)파열(단순비닐파손특약가입시는 보상)
- ▶ 소파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침수는 보상)
- ▶ 전쟁,내란,폭동,소요,노동쟁의등에 의한 손해

재난지원금제도와 비교

- ✓재난지원금제도는 최소복구비만 정액지급
- ✓풍수해보험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는 각각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음

(주택면적100㎡기준)

구분		재난지원제도		풍수해보험 (단독주택 기준)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주택	전파	900만원	-	9,000만원	900만원
	반파	450만원	-	4,500만원	450만원
	소파	보상없음	-	2,250만원	225만원
	침수	최대 100만원	최대 100만원	최소 250만원	최소 150만원

○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 : 이미 보험료 보조(국비 및 지방비)가 되었으므로 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 각종 의연금 등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됨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목적물 : 보험도입이 재난지원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행 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나 갑작스런 제도시행으로 혼란을 방지코자 지원기준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 추진

※ 재난지원금 개인별 지원한도 하향조정: '05년이전 : 무제한 → '06년 : 3억원 → '07년~'09년 : 2억원 → '10년 이후 : 5천만원 한도

년도별 보험금 지급및 지원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계		주 택		온실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총 계 (06년~14년)	7,768	38,716	3,328	12,598	4,432	25,963
2014년	904	5,023	138	553	766	4,471
2013년	887	4,057	309	868	578	3,189
2012년	3,681	23,220	1,456	8,169	2,225	15,051
2011년	1,055	3,159	641	1,116	414	2,043
2010년	628	1,534	430	766	195	646
2009년	442	1,018	287	788	153	208
2008년	67	198	29	102	38	96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입가구	20,563	244,566	296,721	310,687	342,444	299,177	345,598	298,999	
국고	시범 사업기간	63억	63억	63억	88억	93억(9월초) 조기소진	120억(8월 초)조기소 진	139.81억	192.4억

가입동의서양식

풍수해보험 II (지자체단체용) 가입동의서

1. 단체보험 가입동의

- 본인은 「풍수해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의해, 본인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보험회사와 맺는 단체보험계약에 대하여 본 가입동의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함(보험료 출금이체 포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명(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현 거주지(우편물수령지)			
주택 소재지	(□ 상동)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보험료 지원대상	주택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합법주택여부	주택면적	()㎡ *건축물관리대장등제기준	
□ 주택소유자	보험가입비율	□ 70% □ 80% □ 90%	
	특약선택	□ 동산특약 □ 침수확장특약	
□ 주택세입자	보험가입비율	□ 90%	
	특약선택	□ 지진부(不)보장특약	
희망보험사 선택	□ 동부화재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농협손해보험		
보험가입기간	□ 1년 □ 2년 □ 3년	가입주택 거주여부	□ 실제거주 □ 빈집
풍수해보험가입여부	□ 가입 (보험회사명 , 보험종료일) □ 미가입 □ 모름		
보험료 납부 : 보험사는 아래 본인명의 계좌에서 정부지원분을 제외한 주민보험료를 출금이체합니다. 주민보험료를 납입을 위해 예금잔액을 유지해야 하며, 보험료 이체 완료후에 보장이 개시됩니다. 출금이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자(피보험자)와 예금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2.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조회,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의해,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피보험자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처리·조회·제공에 동의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서명바랍니다.) (□친권자/후견인서)

년 월 일		성명 (서명)	
공 통	수집·활용·처리·조회·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험계약정보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 보험금지급정보 (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기타는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 법령상 보험계약 체결이 부득이하게 거절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수 집 · 활 용 · 처 리 · 제 공	-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상당·이행, 계약적부, 보험금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 - 조사연구, 서비스 제공, 손해발생의 신속·검증 - 보험모집·접촉·유지,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제공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발급 및 계약상 의무 이행 - 보험계약 관련 분쟁 대응, 고객 이익 관리	
□ 동의 □ 미동의	조회	-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 보험금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 고객 다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조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 공 기 관	①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② 국가기관(국민안전처,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위원회, 법원), 국민안전처가 사후관리를 위해 업무를 위탁한 자(위탁 설문조사 기관 등), 손해보험사(재보험사, 포환), 귀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등), 계약 체결·이행 등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위탁 콜센터 등)	
□ 동의 □ 미동의	이용 목적	①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② - 재보험, 보험 공동인수 등 - 보험모집 및 사후관리 - 사고처리 접수 및 민원접수 - 보험사고 조사,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 손해발생의 신속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보험업법이 정한 목적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상 업무수행	

현장실사 확인자 :

(인 또는 서명)

온실설문서양식

풍수해보험 I (온실용) 가입설문서

- 본 보험가입설문서는 보험가입의 기초 자료로서 보험회사의 계약인수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관하여는 향후 보험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문서는 대표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은 책임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본 보험가입설문서는 보험료 산정 및 보험가입의 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외부기관 및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가 개인(법인)사업자이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사 시 **사진촬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다수 통 가입시에는 유형별 대표 통만 촬영하시면 됩니다.
- 햇장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시설물 소유주 인적 사항

성명	
목적물소재지	※ 온실이 설치된 지역의 농지번호 또는 위치 설명(순해발생시 위치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기본정보

온실 소유 여부	☐ 소유 ☐ 비소유(임차)	온실의 용도	☐ 영농 ☐ 주거 ☐ 상업 ☐ 기타
설치지역	☐ 평지·산지 ☐ 하천고수부지내	재배작물	※ 농작물은 보살하지 않음
풍수해 사고 경력	☐ 있음 ☐ 없음	주요구조물 손상여부	☐ 침상 ☐ 외벽·기둥·지붕·손상

■ 가입정보

보험가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보험가입비율		☐ 70% ☐ 90%		소유온실 총면적(㎡)		(㎡)	[(동)]	
소유온실 전체가입여부		☐ 전체면적가입 ☐ 일부면적가입		보험 가입면적(㎡)		(㎡)	[(동)]	
가입온실 위치 설명		※ 일부면적만 가입시 가입된 온실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 (순해발생시 확인이 가능해야 함)						
특약가입여부		☐ 단순비닐파손담보 특별약관(온실내 작물재배 중인 경우만 보상) ☐ 하천고수부지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인의 담보 특별약관(하천고수부지내 온실 필수선택)						
온실형태구분(대분류)		☐ 유리·철골메트온실 ☐ 철골유리온실 ☐ 목재하우스 ☐ 족자하우스 ☐ 철재파이프하우스 ☐ 자동화비닐(농가표준형) ☐ 자동화비닐(내재해형)						
서까래 파이프 규격		☐ SPVH ☐ SPVHS	단동 및 연동 구분		☐ 단동 ☐ 연동	규격 및 비규격 구분		☐ 규격 ☐ 비규격
철재 파이프 하우스 규격	폭(m)	서까래 규격	간격(cm)		가로대 규격	개수		
	축고(m)		직경(ø, cm)			직경(ø, cm)		
	통고(m)		두께(t, cm)			두께(t, cm)		
농가표준형 철재파이프하우스 (SPVH 파이프)		☐ A형 ☐ B형 ☐ C형 ☐ D형 ☐ E형 ☐ F형 ☐ G형 ☐ H형 ☐ I형 ☐ J형 ☐ A-1형 ☐ B-1형 ☐ 1-A2형 ☐ 1-2W ☐ 1-2W(A) ☐ 1-2W(B) ☐ 1-2W서까래보강형 ☐ 1-2W보완형						
내재해형 철재파이프하우스 (SPVHS 파이프)		☐ 단동1 ☐ 단동2 ☐ 단동3 ☐ 단동4 ☐ 단동5 ☐ 단동6 ☐ 단동7 ☐ 단동8 ☐ 단동9 ☐ 단동10 ☐ 단동11 ☐ 단동12 ☐ 단동13 ☐ 단동14 ☐ 단동15 ☐ 단동16 ☐ 단동17 ☐ 단동18 ☐ 포도1 ☐ 포도2 ☐ 감(민)1 ☐ 단(민)1 ☐ 단(민)2 ☐ 단(민)3 ☐ 단(민)4 ☐ 광(민)1 ☐ 광(민)2 ☐ 광(민)3 ☐ 연(민)1						

실사일 :

실사자 :

(서명)

본인(계약자)은 위의 풍수해보험 I (온실용) 가입설문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본인(계약자)은 이중구조온실의 안쪽온실 및 온실 안의 농작물은 보상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풍수해보험 I (온실용) 가입설문서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온실의 유형 및 가입면적 등이 실제와 다르거나 사고 당시와 다른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풍수해보험 I (온실용) 가입설문서와 청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상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법정대리인 (관계 :)]

(서명)

사업운영 유의사항및 가입촉진활성화

➤ 유의사항

- 중복자문제,보험가입시 자격변동및 적격여부,주택소유유무,가입면적,가입동의서작성시
자필서명및 정확한 정보입력

➤ 가입촉진 홍보

-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입동의서1장으로 간편가입
- 보험료지원
- 실질적피해보상(노후주택권장(전국적으로170만채소재,가입건수는 신규주택을 포함해도 30만채수준임)
- 최근 지진사태부각되는 현실속에서 지진담보 가능한 독립 보험상품
- 자연재해취약지역 집중 홍보

◆풍수해보험 만족도, 인지도 설문조사결과

만족도 - 응답자의 61.2%가 풍수해보험 만족

인지도 - 응답자의 63.6%가 풍수해보험 제도 인지

긍정적 보험가입 의사도 56.8%로 조사

2016년달라지는 풍수해보험

✓2016년 사업예산 : 213억원예정

① 지자체별사정에 따라 주민부담분 추가지원(10~20%)

- 본인부담분 감소 효과

② 4,5월중 실손형상품개발

- 정액형 보험의 문제점 보완,실제 손해피해에 근접한 상품개발

③ 풍수해보험료 인하

- 주택 15%,온실27.8%인하

보상사례



1.사고일자:2012.08.28

2.지역:경남 남해군 남면

3.목적물:주택(50.7m²)

4.보험료:91,300원(41,000원본
인부담)

5.사고내용:태풍(볼라벤)주택
50.7m²파손

6.보험금:전파(45,630,000원)

보상사례



1.사고일자:2012.08.28

2.지역:전남 무안군 일로읍

3.목적물:주택(78m²)

4.보험료:101,000원(45,400원
본인부담)

5.사고내용:태풍(볼라벤)주택

6.보험금:반파(35,100,000원)

보상사례



1. 사고일자: 2012.09.17

2. 지역: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3. 목적물: 주택(329m²)

4. 보험료: 460,800원(167,000원 본인부담)

5. 사고내용: 집중호우(태풍산바)로 인한 주택침수

6. 보험금: 침수(13,250,840원) 주택침수보험금확장특약가입으로 2배수지급

보상사례



1.사고일자:2010.04.27

2.지역: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3.목적물:철제파이프비닐하우스
스J형(330m²)

4.보험료:705.056원(283,232원
본인부담)

5.사고내용:강풍으로 비닐하우스
1동의 서까래가 구부러짐

6.보험금:전파(4,395,000원)

보상사례



1.사고일자:2013.01.21

2.지역: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3.목적물:자동화비닐하우스
(897m²)

4.보험료:4,644,000원
(2,066,500원본인부담)

5.사고내용:대설

6.보험금:전파(47,780,857원)

보상사례



1.사고일자:2011.02.12

2.지역:강원도 삼척시 교동

3.목적물:주택(보험가입금액 53,751,000)

4.보험료:268,200원(114,000원 본인부담)

5.사고내용:폭설로 인한 지붕 파손,지붕재5m²이상파손

6.보험금:소파(13,437,000원)

재난지원금지원제도 하에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

보상사례



1.사고일자:2010.04.13

2.지역:강원도 삼척시

3.목적물:주택

4.보험료:64,200원(본인부담
3,800원)

5.사고내용:집중호우

6.보험금:소파(9,180,000원)

재난지원금지원제도 하에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

보상사례



1.사고일자:2012.09.17

2.지역:경남 통영시

3.목적물:주택

4.보험료:329,300원(41,500원
본인부담)

5.사고내용:태풍(산바)

6.보험금:소파(22,775,000원)

재난지원금지원제도 하에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

Q & A

감사합니다